

2020. 06. 04.(목)

<본사 중회의실(7층)>

-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8대 대의원 -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< 임시대의원회 안건개요 >

- 2020년도 임금교섭(안) 승인의 건
- 통상임금소송 진행 승인의 건
- 조합원 경조금 지급규정 개정(안) 승인의 건
- 코로나19 생활안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승인의 건



민주노총/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
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I. 제18대 대의원회 구성현황

① 활동근거

-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2절(대의원회) 제17,18조
- 대의원회 당선 공고('20.3.13.) / 조합규약 제18조 의거
 ※조직개편·인사이동·자진사퇴 등의 사유발생시 추가·보궐선거 별도공고

② 대의원회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'20.03.12. ~ '21.01.31. ※제19대대의원 선출공고시까지
- 활동범위 : 조합규약 제20조(대의원회의 기능)
 ※제15조 제2항(해산, 위원장·임원 선출 등)을 제외한 총회의 기능
- 대의원구성

소속(배정인원)	이름	비고	소속(배정인원)	이름	비고
여성대의원 (1)	이 화 영	-	대전오월드 (4)	맹 재 영	-
혁신기획실 (1)	전 동 혁	신 임		김 근 영	신 임
경영지원처 (2)	홍 의 준	-	환경사업처 (8)	염 기 범	신 임
	차 영 주	신 임		이 수 만	신 임
고객지원처 (1)	백 민 호	-		김 철 규	신 임
도시개발처 (2)	한 상 은	신 임		이 정 현	-
	이 흥 인	신 임		정 종 희	신 임
건설사업처 (2)	이 정 관	신 임		채 양 기	-
	정 태 원	신 임		박 인 병	신 임
대전오월드 (4)	김 용 선	-		임 재 현	신 임
	박 중 상	-			
합 계			[당초] 18명 ▶ [변경] 21명 (증 3명)		

※ 소속별 배정인원은 대의원회(2020.01.13.)에서 논의된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

Ⅱ. 임시대의원대회 안건

1 2020년도 임금교섭(안) 승인의 건

[임금교섭 안건]

1. 임금을 2019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4.2%를 인상 (호봉승급분 1.4% 포함)
2.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기본급화
3. 2020년 예산에 반영된 예산성과금을 연내 지급

2 통상임금소송 진행 승인의 건

[통상임금소송 진행]

- 자체평가급(100%)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고소절차 이행

○ 통상임금 산입범위

- 자체평가급의 75% (최고 125%, 최저 75% 중 최저율 적용)

※ 자체평가급도 개인별 차등지급을 해야하므로 차등 50% 가정하여 산출

○ 적용범위

- 시간외근무수당, 휴일근무수당, 야간근무수당, 연차수당

○ 3년 임금채권 추정액 : 약 330백만원 내외

○ 향후 추진계획

- 법률대리인 선임 ▶ 소송액 산정 ▶ 총회(참여서명) ▶ 소장접수

※ 민주노총 법률원, 문현웅변호사사무소(징계위원회 위원) 등 수임료 견적 비교 후 선임예정

3 조합원 경조금 지급규정 개정(안) 승인의 건

[규정 개정내용]

- 자녀 출산에 대한 축의금 지급을 **육아용품**에 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
- 정년퇴직 전별금(1백만원) 지급대상을 퇴직 전 3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항목 삽입

○ 조합원 경조금 지급규정

- 제1조 【목적】 본 규정은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 지급 대상, 지급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【대상】 조합원 및 후원회원으로 한다. 단, 단체협약 제6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- 제3조 【지급기준】 경조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, 지급한다.

구 분	내 용	금 액	비 고
조의금	본인 및 배우자 사망	1,000,000	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	200,000	
축의금	본인 및 자녀 결혼	100,000	
	자녀 출산	100,000	육아용품
전별금	정년퇴직	1,000,000	조합원으로 퇴직 시 ▶ 퇴직전 3년간 조합원 자격 유지시

- 제4조 이하는 생략

4 코로나19 생활안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

[긴급재난지원금 지급]

- 대상인원 : 총 260명 / 조합원(224명) + 후원회원(36명)
- 지급금액 : 26,000,000원 (1인당 10만원)

※ 사우회 기타상조금(10만원/인), 노조창립기념 선물구입비(10만원/인)와 별도로 추가지급

○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유

-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민생·경제 전반으로 어려움이 확대된 상황
- 조합동지들 가정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

○ 대상인원 : 총 260명

- 조합원 232명중 정지조합원(휴직자)명을 제외한 224명에게 지급
 - ※ 휴직자는 정지조합원으로 휴직기간 내 조합비 납부의무와 조합원 권리행사가 정지되며, 노조창립기념선물도 미지급.
- 후원회원 36명에게 지급 (보직자 28명, 미보직자 8명)
 - ※ 후원회원은 보직자중 자발적 후원금 납부회원(3만원/월)과 인사, 노무, 예산, 감사, 비서 업무를 맡고 있는 미보직자(조합원과 동일하게 조합비 납부)

○ 지급금액 : 26,000,000원 (1인당 10만원)

○ 지급방법 : 현금지급

- 사우회 기타상조금 10만원 + 노조창립기념 선물구입비 10만원 + 노조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 동시지급
 - ※ 총 30만원을 현금으로 일괄지급 (6/15~6/17 지급예정)

Ⅲ. 기타 현안사항 논의

□ 현안사항 목록

연번	안건개요	비고
1	3급 승진배수범위 확대 (우대승진제도 보완 등)	2분기 노사협의회 사측안건
2	노동조합 네이버카페 활성화 방안	카페운영에 관한 평가, 제안
3	노동조합 창립기념행사 추진	7월 3일 개최예정
4	노동이사제	전도노협 연대로 추진 중
5	직무성과급제	정부의 일방적 추진 저지방안
6	2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수렴	6월중 개최 예정
7	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	
	- 이 하 여 백 -	

끝.